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유은혜 (교육부장관)
제출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학교규칙의 기재사항에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여 증가추세의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단위학교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한편 학업중단 숙려제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학교규칙의 기재사항에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9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1. 11. ~ 2021. 2. 2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①법 제8조에 따른 학교의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 야 한다.	①----- ----- ----- -----.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신설>	8. <u>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u>
8. ~ 10. (생략)	9. ~ 11. (현행 제8호부터 제10 호까지와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부 교육기획보장과	
연락처	(044) 203 - 6520